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기술혁신사업자의 정의를 현행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의 결산 처리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수취 관계 등을 명확히 함.

수정주요내용

가. 기술혁신사업자의 정의를 현행법상 기술혁신의 정의가 사업화를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나. 기술혁신사업자의 하나로 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1항제7호다목 삭제).

다. 개정안은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 계정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립금의 의미가 불명확함에 따라 이익금이 생겼을 때 계정에 적립하도록 규정을 추가함(제27조의4제3항 신설).

라. 개정안의 수수료·보증료 수취대상 사업의 수행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 기술보증기금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수수료·보증료 수취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을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항제9호 다목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안 제2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안 제3항) 중 “사업화계정의”를 “제3항의”로 한다.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제27조의3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안 제28조의2제1항 중 “기술보증기금은”을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은”을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신 설>	7. "기술혁신사업자"란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
	가. 중소기업	가. ~ 나. (개정안과 같음)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자	<삭 제>
	라.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개정안 라목과 같음)
<신 설>	8.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이란 기술혁신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8. (개정안과 같음)

	따른 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9. "기술자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
	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 나. (개정안과 같음)
	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그 밖의**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	다. ---------- **그 밖에** ----------
	라. **가목 내지 다목,**	라. **가목부터 다목**

	마목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까지, ----------
	마. 그 밖에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0.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1. “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2. “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12. (개정안과 같음)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사업화계정----------.	② (개정안과 같음)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3. 금융회사등	3. (개정안과 같음)

단체 등		
<신 설>	4.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제27조의3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④ ---------- **제3항의** ----------.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지출 및 운용과 회계·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화계정 ----------.	⑤ (개정안 제4항과 같음)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 ② (생 략)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사항은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 ②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 ③ (개정안과 같음)

	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26

발의연월일 : 2025. 10. 30.

발 의 자 : 이재관・장철민・문진석
정진욱・장종태・박홍근
강준현・허성무・허종식
이정문・안도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위험분담 수단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공률은 높은 수준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업 성장과 국가경제 기여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어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반 확충에 기여할 다양한 주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및 관련 자금의 이자 지원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기술자산등, 회사채등, 유동화, 유동화보증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6호부터 12호까지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개정).

라. 기술보증기금이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유동화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는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 업무 수행 시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개정안의 기술혁신사업자의 정의를 현행법 체계에 맞추어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나. 기술혁신사업자의 하나로 정의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1항제7호다목 삭제). 다. 기술혁신사업화계정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 계정에 적립하도록 함(제27조의4제3항 신설). 라. 수수료·보증료 수취대상 사업의 수수료·보증료 수취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기술혁신사업자”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ㆍ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이란 기술혁신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그 밖에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마. 그 밖에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

한다.

12. “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장의 제목 중 “활성화”를 “및 사업화의 활성화”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종전의 제27조의3) 제목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7조의3) 제1항 중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를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를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로,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한다.

3. 금융회사등

4.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제27조의3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④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

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5장에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①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

②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라고 한다)는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기술혁신사업자

③ 제1항의 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은 제27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제27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 포괄승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신 설>	7. “기술혁신사업자”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8.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이란 기술혁신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9. "기술자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그 밖에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마. 그 밖에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신 설>	11. “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신 설>	12. “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 ② (생략)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항은----------.
<신 설>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4(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기술혁신 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사업화계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3. 금융회사등
<신 설>	4.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제27조의3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지출 및 운용과 회계·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화계정----------.
<신 설>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①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

	②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라고 한다)는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기술혁신사업자 ③ 제1항의 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

	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